

수원지방법원 2024. 7. 9 선고 2023가단58503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양경석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5. 21.
판 결 선 고 2024. 7. 9.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1. 11. 8.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2. 6. 15. 접수 제962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2/13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D, E, F, G 사이에 2021. 11. 8. 한 상속재산분할협약과 이 사건 각 부동산 3/65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E, F, G 사이에 2022. 3. 23. 한 상속재산분할협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 B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3/65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2. 6. 15. 접수 제962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H조합(이하 ‘소외조합’이라고 한다)은 2019. 7. 30.과 같은 해 8. 1. C에게 합계 795,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해주었다가 C가 이를 상환하지 않자 대출금 중 72,540,180원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2022. 10. 19. C에 대하여 소외조합에 72,540,18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2022가단545153), 그 판결은 2022. 11.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소외조합은 2023. 4. 10. 위 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이후 원고도 C를 상대로 대출금 중 3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2023. 5. 17. 원고 청구취지대로의 지급명령을 발하였으며(2023차전5112) 그 지급명령은 2023. 6.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I(이하 ‘망부’라고 한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2021. 11. 8. 사망하였고, 망부의 가족으로는 배우자 D, 자녀로는 피고, C, E, F, G이 있었다. D, 피고, C, E, F, G은 2021. 11. 8.1)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약(이하 ‘이 사건 분할협약’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그러나 이 사건 분할협약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위 D(이하 ‘망모’라고 한다)이 2022. 3. 23. 사망하였고, 피고는 2022. 6. 15.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96216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C에게는 2023. 4. 9.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 약 876,612,858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2024. 1. 22. 기준 시가 합계 약 150만 원의 자동차 2대(그 중 1대는 공유), 약 300만 원의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고, 221,000,000원 상당의 화성시 J아파트 K호도 2023년경 공매로 처분되기 전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는 채무초과상태의 무자력인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단독으로 상속받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여 망부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었던 2/13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를 한 데 이어,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인들의 공유상태였던 2022. 6. 15.경 망모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종전 분할협의 내용대로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그 무렵 망모의 지분(3/13)에 관하여도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상속재산분할협의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와 망모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협의 모두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합계 13/65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여부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분할협약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분할협약의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인 2/13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약을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2/13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한 이 사건 분할협약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3) 그런데 이 사건 분할협약의는 상속인 6명이 한 것이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C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성을 갖는 부분은 C가 자신의 상속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인데, 피고, C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들의 상속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협의를 하였을 뿐 C의 상속분에 관하여 어떠한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C,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분할협약에 관하여만 사해행위로 인정한다.

나. 망모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약의 인정 여부

원고는 망모의 사망으로 인한 피고, C, E, F, G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모의 지분 3/13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에 따라 민법 제187조, 민법 제1015조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협약에 따른 등기 없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분할협약에 관한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분할협약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망모의 지분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모의 상속재산인 부분이 있다는 전제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가 동생과 함께 거주하는 곳으로서 정상적인 상속재산 분할을 통해 피고가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를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의 항변으로 선행하여 판단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오랜 기간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며,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 2/13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2. 6. 15. 접수 제962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기선

목 록

1. 건물

화성시 L건물 M호

[도로명주소] 화성시 N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109.09㎡

2층 50.10㎡

2. 토지

화성시 L 대 903㎡. 끝.

1)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75호) 제2의 나항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분할협의의 연월일이 망부의 사망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분할협의일은 그 이후일 수도 있으나, 피고도 이에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같은 날로 인정한다.